

사학연금 수급자의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과세상 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연금수령을 중심으로

박성욱*, 김수성**

〈 초 록 〉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지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연구팀 차장

〈 초록 (계속) 〉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핵심용어 : 사학연금, 해외연금 수령, 공무원연금, 전세계소득, 캐나다연금, 사회보장협약, 조세협약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학연금수급자의 국제적 연금소득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캐나다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캐나다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의 연금세제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와는 달리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캐나다에서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 다소 불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4대 공적연금을 해외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에서 동일한 연금소득과세의 세제취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 수령하는 국내지급 사학연금에 대하여는 국민연금의 수급과 같이 비과세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연금세제를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이동 인력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내국세법 규정에 의해 외국 연금소득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 미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연금소득의 과세권이 거주지 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모두 과세 가능하다. 국제이동 근로자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면서 국외에서 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거주지 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연금수급자가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한국에서 지급한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여야 한다. 만약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될 경우 해외의 세율이 국내에서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에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연금을 캐나다에서 수령할 경우 비과세되고 있다. 한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외 체약국과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하여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옳바르지 않다.

이러한 연금과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개정을 통해 연금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한국·캐나다 간의 조세조약을 수정하거나 사회보장법률에 별도로 해외 연금 과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그밖에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의 상호조세조약에 따른 의정서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 및 보험연금에 관하여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는 비과세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조세조약의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법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을 해외 계약국에서 수령할 경우 비과세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공적연금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이에 상응하여 연금에 대한 국제조세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의 제18조에 언급하고 있는 사회보장법률의 규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금 관련 사회보장협약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상호간에 체결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 등은 현재 양 국가 간 사회보장협약이 맺어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의 국제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국내 모든 공적연금은 공통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과세당국의 명확한 법적용을 위한 조세조약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과세당국에서는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고 납세자의 세무행정의 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 간의 명확한 과세기준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간과해왔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국제적 연금세제의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국제적 연금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과세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문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세조약의 구체적 개정을 통하여 모든 공적연금이 동일하게 과세가 적용되도록 과세형평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보장법률 규정 대상 확대와 조세조약의 구체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국제적 연금과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공적연금 해외수령시의 과세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한국·캐나다의 조세조약상 해외거주자 연금지급 시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제IV장에서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제2장 공적연금 해외수령시의 과세 현황

1. 선행연구의 검토

연금세제의 국제조세 측면을 다루었던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홍범교(2013)의 연구에서는 국제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연금소득과세의 측면을 살펴보았다.¹ 근로자가 국제적으로 이동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홍범교의 연구에서는 근로의 제공을 원인으로 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선택한 조세지원에 적격한 사적연금으로만 한정하였다는 데에서 공적연금은 고려되지 아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홍범교외2(2013)의 연구에서는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과세제도와 미국과 캐나다의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살펴본 후 국제 이동성 인력의 현행 퇴직연금과세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유호림(2011)과 손해연(2010)의 연구에서는 조세조약 개정을 통한 한·중 국제거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는데 한국·중국 조세조약 개정 필요성 및 개정의 기본 시각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제적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조약의 개정을 주장하였다.²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국제적 연금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세협약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김선영(2013)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절차를 살펴보았고, 김영순(2015)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주로 모자회사간 지분 '소유'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김재승(2014)은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 과세방법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김진웅(2009)은 국제거래에 있어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협약의 취급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은

1. 홍범교, 2013,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보고서

2. 손해연, 2010, 조세조약 개정을 통한 한·중 국제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월드텍스연구논집

주로 조세조약에 관한 조세법적인 측면을 살펴본 것이다. 윤지현(2007) 역시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개념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분석하였는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밖에 전영준(2015)은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다. 최근 이상엽 외 4(2017)는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분석을 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 바 있다.

2. 연금 관련 두 가지 국제조세 협약 고찰

가. 연금에 관한 두 가지 조세협약 이해

현재 연금에 관한 조세협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OECD 모델 조세협약과 UN모델 조세협약으로 구분된다(이상엽 외, 2017). OECD 모델 조세협약은 제18조에서 연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UN모델 조세협약도 역시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8조에서 과거 근무로 인한 대가로 수취하는 연금 및 유사 지급금에 대하여 수취인이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는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한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³

반면, UN 모델 조세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⁴ UN모델 조세협약 제18조(연금)에서는 A안과 B안의 두 개 선택 안이 있다(이상엽 외, 2017). A안과 B안의 제1항은 OECD 모델조세협약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A안의 제2항과 B안의 제3항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공적연금 및 기타 지급금에 대한 원천국가의 배타적 과세권(the exclusive right)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B안의 제2항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다른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서 지급(Made by)하는 연금에 대한

3.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8조(연금)과 관련하여 모든 나라들은 직업연금의 과세국가 결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마다 추가적으로 보험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에서 수령하는 지급금과 전쟁연금에 대한 과세권 배분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엽 외 4(2017)의 조사에 의하면 직업연금과 관련하여 총 79개 국가 중에서 61개국이 거주지국 과세를 하고 있으며, 10개국만이 양국에서 모두 과세를 하고 있고, 8개국이 지급지국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금의 과세권 배분 조항을 둔 국가는 모두 30개 국으로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하는 국가는 15개국이며, 양국에서 과세하는 국가는 5개국이고 지급지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은 7개 국가이다. 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수령하는 지급금의 과세권배분 규정을 둔 국가는 21개에 해당하며, 13개국은 지급국가에서 나머지 8개국은 양국에서 과세됨.

4. 외교부 사이트 (<http://www.mofa.go.kr>)

원천국가의 과세권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OECD 모델조세협약과 UN모델 조세협약상 연금의 상호비교는 <표 1>과 같다.

<표 1> OECD 모델조세협약과 UN모델 조세협약상 연금의 상호 비교

구분	OECD 모델 조세협약	UN모델 조세협약	
		A안	B안
과거 고용으로 인한 연금에 대한 거주지국가의 배타적 과세권 ¹⁾	제1항	제1항	제1항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지급국가 과세권 ²⁾	-	-	제2항
공적연금 지급국가의 배타적 과세권 ³⁾	-	제2항	제3항

주 : 1) 과거 고용으로 인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금이나 유사 지급금임.

2) 제1항의 예외로서 만약 연금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타방 계약국 거주자 또는 타방계약국에서 설립된 고정사업장이 지급하는 경우 지급국가에서 과세가 가능함.

3) 공적연금이란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에 따른 공공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 또는 유사지급금을 의미함.

참고로, 사회보장제도에서 수령하는 지급금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사회보장 제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국가별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연금, 정부용역 혹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⁶ 사회보장제도에서 수령하는 지급금을 연금규정에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총 21개국에 해당된다. 그 중에서 지급국가에서만 과세가 가능한 국가는 네팔, 덴마크, 독일, 미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오만, 중국, 캐나다, 핀란드, 필리핀으로 총 13개국이 이에 해당된다. 지급국가와 거주국가 양 계약국 모두가 과세가 가능한 나라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슬로베니아, 이란, 프랑스로 총 8개국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은 제24조 사회보장지급금 조문을 별도로 두어 공적연금에 대한 원천국가의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단, 제22조 정부용역에 규정된 지급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지급국가에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2>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과세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5. 이상엽 · 박수진 · 유현영 · 이형민 · 조승수, 2017,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142~144를 참조함.

6. OECD 모델조세협약 제18조 주석서 문단 24

〈표 2〉 사회보장제도에서 수령하는 연금 과세현황

구분	국가
거주국가 과세	해당사항 없음
양 체약국 과세	네덜란드, 노르웨이,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슬로베니아, 이란, 프랑스
지급국가 과세	네팔, 덴마크, 독일, 미국,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오만, 중국, 캐나다, 핀란드, 필리핀

주 : 이란은 사회보장지급금에 대한 과세범위에 공무원법에 따른 연금 및 기타 지급금까지 확대함.

나.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첫째는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과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의 목적이 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혜택으로는 우선,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각 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 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된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다.

3. 한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의 내용 및 현황

가. 조세협약 내용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은 총 29조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⁷ 양국 간의 조세협약 제2조 대상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캐나다에 있어서는 캐나다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중 연금 관련 조세조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수령할 경우 전세계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과 캐나다의 협약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나.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조약 18조의 내용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 제1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006년 12월 18일에 개정된 내용에 의할 경우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이를 수령할 경우 캐나다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⁸ 즉, 한국에서 지급한 연금은 한국의 조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이나 연금보험 등에 따라 지급된 연금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총 연금지급액의 15%와 공적연금의 연금수급자가 한국의 거주자일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7.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발효일은 2006.12.18일

8. 가. 연금지급총액의 15 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 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로 과세할 수 있음.

세 번째로,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도 그 계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사람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한국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총 지급액의 10%와 연금의 해약 시 등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는 연금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⁹ 및 수당이나 어느 한쪽 계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그리고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계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지급하는 연금 중에서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전쟁 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이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조세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면세되는 연금 이밖에 위로금 등에 대하여는 캐나다의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 캐나다와 체결한 연금 및 보험연금 관련 조세협약의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도 그 계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계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계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도 그 계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 현재 전쟁연금에 대하여 협약을 맺은 나라는 오직 캐나다만 존재한다. 전쟁연금의 과세권 배분규정은 캐나다에만 존재하며 지급국가에서 과세함.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 가.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 나. 어느 한쪽 계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 다.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계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연금 및 보험연금의 조문을 쉽게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즉, A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부담금을 불입하고 기여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국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B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도 그 계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계약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연금지급 총액의 15퍼센트 및 연금 수령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계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 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로 산정한 세금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A국에서 발생하여 B국 거주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금은 B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B국의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이 아닌 퇴직연금과 같이 정기적인 연금지급일 경우에는 A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의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를 할 수 없다. 즉, 연금지급 총액이 매월 3백만 원으로 연간 36백만 원을 수령한다면 36백만 원의 15%인 5.4백만 원과 A국의 거주자였을 경우에 36백만 원에 대한 한계세율을 20%로 가정한다면 36백만 원의 20%인 7.2백만 원의 둘 중 작은 금액인 5.4백만 원까지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캐나다 조세협약에서는 연금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도 그 계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령, A국에서 발생하여 B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B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연금액의 10%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 즉 36백만 원의 연금을 지급할 경우 3.6백만 원까지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한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가간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의 경우에는 B국에서는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A국에서 발생하여 B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전쟁 참전 연금 및 수당에 대하여는 B국에서는 비과세한다. 또한, 어느 한쪽 계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에 대하여도 비과세한다. 즉, A국에서 발생하였지만 B국에서 거주자하고 있으면서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B국에서 비과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만이 이에 해당되며,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계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가령 A국에서 발생하여 B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A국에서만 과세하고 B국에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다.

4.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내용 및 이해

가. 한국과 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1) 협정 체결 경과 현황

협정 체결 경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94년 7월에 양국 간 협정 체결 추진 합의를 하였고, 1995년 10월에는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제1차 실무교섭회담(캐나다)을 하였으며, 1996년 2월에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교섭회담(한국)을 하였다. 1997년 1월에는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고, 1998년 9월에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 실무회담(한국)을 하였다. 1998년 12월에 한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대한 통보를 하였고, 1999년 1월에 캐나다의 국내절차 완료에 대한 통보를 하여 1999년 3월에 한국·캐나다 실무기관 간 협정 시행회담(캐나다)을 하였으며, 1999년 4월에는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행정약정에 대하여 서명하고, 1999년 5월에 비로서 한국·캐나다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었다.¹⁰

10. 협정 실무 기관으로는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NPS)이며, 캐나다에서는 인력사회개발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www.hrsdc.gc.ca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 www.cra-arc.gc.ca이 협정 실무기관이 됨.

(2)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과 사람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되며, 캐나다에서는 노령보장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및 캐나다 연금제도와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이 적용된다. 또한, 협정이 적용되는 사람으로는 한국이나 캐나다 중 적어도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법령에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았던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국적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양국의 국민, 무국적자, 난민, 또는 제3국인으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아 온 사람은 그 피부양자 및 유족과 함께 이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¹¹

(3)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혜택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혜택과 협정에 따른 급여의 혜택이 있다. 우선,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혜택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되어 있는 국가의 법령에만 적용되며, 자영업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만을 적용 받는다. 어떤 사람이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일방국에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되고 타방국에서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그 사람이 일방국에 거주한다면 일방국의 법령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파견 근로자는 본국의 연금제도 가입 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지 국가의 연금제도 가입이 면제된다.¹² 이처럼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른 혜택으로는 연금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혜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이중과세 납부 면제 및 상대국 거주 급여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해제와 기업의 국내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점이 있다. 참고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국가별 현황은 <표 11>과 같다.

11. 구체적인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협정문을 참조하기 바람.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참조.

〈표 3〉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 국가

구분	형태	보험료 납부국가
근로자	캐나다에서 근로하는 경우	
	- 캐나다에서 고용되어 캐나다에서 근로하는 사람	캐나다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캐나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캐나다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캐나다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한국에서 고용되어 한국에서 근로하는 사람	한국
	- 캐나다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	캐나다
자영업자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캐나다에서 자영업하는 사람	한국
	- 한국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자영업하는 사람	한국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	캐나다
- 캐나다에서 통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	캐나다	

두번째로 협정에 따른 급여 혜택을 들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 연금가입기간 만으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협정에 따라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급여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협정에 의한 캐나다 연금 급여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협정에 의한 한국 국민연금 급여로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급여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캐나다 연금제도(CPP)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하다. 급여액은 양국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에 양국 합산 가입기간에 대한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로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한다.

한편, 협정에 의한 캐나다 연금 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연금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에 캐나다 거주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캐나다 노령보장연금 수급권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캐나다 연금제도(CPP) 급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연금 수급권 설정을 위한 충분한 가입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노령보장연금인 OAS와 동일하게 캐나다 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캐나다 연금수급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거나 받아온 사람 및 피부양자로서 상대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상대국 국가의 법령 적용 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며,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협정에 따라 캐나다인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캐나다 연금제도에는 반환일시금 규정이 없으므로 캐나다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나. 사회보장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 및 체결 시행국 현황

양국 간 협정의 주요 내용은 외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의 파견기간 중 체류국의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체류국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한 장기파견자의 체류국 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을 본국 가입기간과 합산(totalization)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보장협정이란 외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의 파견 기간 중에 체류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체류국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한 장기 파견자의 체류국 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을 본국 가입 기간과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노동자들의 국제적 이동이 과거에 비하여 활발해졌다. 한국인이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 내에 들어와 각종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있다. 자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는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배경들로 인해서 국가 간의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방법들이 다르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을 맺게 되는데 이러한 국가 간 사회보장협약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보장협정은 당사자 국가 간의 사회보장보험료의 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상호간에 약속하고 당사국간의 국민들의 영역간의 이동은 물론 근로활동을 하는 자들에 대한 복지를 계속적으로 증진시키고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사회보장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에 합의하는 것에 사회보장협약의 의의가 있다.

사회보장협약의 체결의 주된 목적은 해외에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통해 근로자 및 사용자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 이외에 해외 장기 체류근로자와

이민자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협정대상국 국민에게 자국민 대우를 통한 급여수급권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

다.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체결 국가 현황

국민연금이 협정 당사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당사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1) 단기과건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보험료 면제, 이중가입 배제)를 위해서이며, (2) 외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가입기간 합산)이며, (3)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법령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하기 위함(동등 대우)이다.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보험료면제 포함)과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된다.¹³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 체결 국가의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협정 발효국 29개국의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 체결 현황

국 가	협정발효일	파견근로자 적용원칙(면제기간)	협정형태
이 란	1978. 06. 01.	기간제한 없음	· 보험료 면제협정
캐나다	1999. 05. 01.	5년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영 국	2000. 08. 01.	5년	· 보험료 면제협정
미 국	2001. 04. 01.	5년(4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독 일	2003. 01.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네덜란드	2003. 10. 01.	5년(합의시 1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일 본	2005. 04.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이탈리아	2005. 04. 01.	3년(3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우즈베키스탄	2006. 05. 01.	5년	· 보험료 면제협정
몽 골	2007. 03. 01.	5년(3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헝가리	2007. 03. 01.	3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13. 현재 보험료 면제 협정국가는 이란, 영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으로 8개국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보장협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에서 확인 가능함.

국 가	협정발효일	파견근로자 적용원칙(면제기간)	협정형태
프랑스	2007. 06. 01.	3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호 주	2008. 10. 01.	5년(합의시 4년 연장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체 코	2008. 11.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아일랜드	2009. 01. 01.	5년(합의시 연장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벨기에	2009. 07. 01.	5년(합의시 1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폴란드	2010. 03.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슬로바키아	2010. 03. 01.	5년(2년 6개월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불가리아	2010. 03. 01.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루마니아	2010. 07. 01.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오스트리아	2010. 10.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덴마크	2011. 09.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인도	2011. 11.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중국	2013. 01. 16.	파견자(5년), 현지채용자(5년)	· 보험료 면제협정
스페인	2013. 04. 01.	5년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스위스	2015. 06. 01.	6년	· 보험료 면제협정
터키	2015. 06. 01.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스웨덴	2015. 06. 01.	2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브라질	2015. 11.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주) 2017년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책자 34면을 참조함.

5. 해외이주자 현황

가. 해외이주자 총계 현황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과 캐나다 및 호주 등에 주로 이주해 있으며, 취업을 통한 해외 이주와 독립 이주, 그리고 가족의 초청을 통한 연고 이주 및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국제결혼 이민, 그리고 사업 이주 형태의 해외 이주를 주로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해외이주의 건수가 많이 줄었지만 끊임없이 해외이주를 시도하는 경우는 예전에 비하여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비하여 최근에는 과거 해외로 이민을 갔던 세대가 은퇴 후 다시 국내로 이주하는 소위 역이민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 국내로 역이주한 교포는 2003년에 2,962명에서 2011년에 4,257명으로 43%나 급증했으며, 국가별로 보면 미국 2,122명, 캐나다 693명, 중남미 지역 국가 629명, 뉴질랜드 115명, 호주 67명, 기타 631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이주자 총계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 이주자 총계

(단위: 명)

연도	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라틴 아메리카	기타	합계
2002		11,758	6,937	673	1,451	122	2,116	23,057
2003		12,412	5,658	948	1,182	557	2,827	23,584
2004		16,291	5,858	1,333	1,160	500	4,496	29,638
2005		17,393	3,898	1,761	1,422	378	3,855	28,707
2006		16,605	2,792	1,940	1,574	281	3,044	26,236
2007		14,032	2,778	1,835	942	433	2,988	23,008
2008		12,829	2,075	1,846	386	490	3,320	20,946
2009		13,171	3,483	1,749	645	591	2,786	22,425
2010		12,447	2,721	1,608	721	510	3,011	21,018
2011		14,004	2,315	1,556	780	509	3,464	22,628
2012		10,843	1,375	906	570	81	1,548	15,323
2013		3,185	457	199	114	297	4,466	8,718
2014		2,487	336	122	96	189	4,137	7,367
2015		2,434	225	107	96	127	4,142	7,131
합계		159,891	40,908	16,583	11,139	5,065	46,200	279,786

자료: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 추세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¹⁴ 2011년 이후 해외이주자 수는 소폭 증가 또는 감소 추세인 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이주국의 이민조건 강화 및 세계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형태별로는 취업이주, 연고이주(초청), 국제결혼, 독립이주, 사업이주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국내에서부터 해외이주를 준비하여 신고한 해외이주신고자는 감소세가 두드러지나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가 거주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증을 취득한 현지이주 신고자의 증감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4년도 또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해외이주 및 현지이주 신고자 수가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활수준 향상 등의 요인으로 실제 해외이주자 수가 감소한 것 외에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거주 목적의 여권 신청이 줄어든 것이 크게 감소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15년에도 해외이주 및 현지이주 신고자 수가 전년도에 대비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각 국가별 우리국민의 해외이주 추이는 다음과 같다. 우리 국민의 이주국가는 미국,

14. 해외이주 신고자와 현지이주 신고자 합계임.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 목적으로 출국 전에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자를 말하며, 현지이주자는 외국 거주 중 현지에서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고 재외공관에 현지 이주신고 한 자를 말함.

제3장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해외거주자 연금 수령시 과세상 문제점

1. 공적연금 간 과세적용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가. 공적연금 간 과세적용의 차이점

공적연금제도는 양 국가 간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및 조세조약 등을 체결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을 지급시 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지 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한국의 연금소득과 해외에서 발생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해외에서 납부를 하는데 이때에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게 된다. 즉, 국제적 이동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외에서 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근로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국내·국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한 국가와 근로를 수행한 국가에서 동시에 과세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경감하고 있다. 즉,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거주지국에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에서 환급을 해주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세금 보고를 완료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이민자가 별도로 캐나다 소득과 한국의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한다. 캐나다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연금소득까지 합하여 신고하면 세금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통상 캐나다의 소득세율이 한국의 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많게 되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양국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는 사회보장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를 하고 있지 않는 데에 비하여 사학연금 수급자는 캐나다에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이민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공제만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체약국 간의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¹⁷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연금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양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는 본인공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캐나다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과거의 고용에 대한 연금에 대하여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 연금의 발생 원천지국으로서 과세할 수 있으며, 캐나다도 동 연금소득자의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¹⁸ 캐나다에서 과세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동 연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캐나다의 세액에서 공제된다.

가령,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인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동시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월 3백만 원(연간 3,600만원)에 대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공단에서는 연금지급을 하면서 연금세액조건표에 따라 과세를 한다고 할 경우 연간 3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각각 연금수급자가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할 경우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과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및 한국에서 지급한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3)을 합산하여 종합과세(소득세법 제4조)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될 경우 해외의 세율이 국내에서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여 캐나다에서 수령할 경우 비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외 체약국과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 예규를 변경하여 공무원과 군인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도 국민연금과 같이 2017년도부터 비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학연금은 예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 여전히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면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연금월액의 두세 달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비하여 사학연금 수급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특수직역연금 간 동일한 과세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17. 재소득 46073-130, 2002.09.26

18. 서면2팀-2433, 2004.11.24

비하여 사학연금 수급자가 세제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위에서 언급한 것을 사례로 간단히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나다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공무원연금 수령자에 비하여 사학연금 수령자가 4.2백만원을 더 납부하는 것이다.

<표 7>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령자의 세금 부담 비교

구분	공무원연금 수령자	사학연금 수령자	비고
한국에서 수령하는 연간 연금소득	36백만 원	36백만 원	차이 없음
캐나다에서 발생한 추가소득	50백만 원	50백만 원	차이 없음
캐나다의 과세대상소득	50백만 원	86백만 원	30백만 원
적용 세율	20%	20%	차이 없음
전세계소득 산출세액	10백만 원	17.2백만 원	7.2백만 원
한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3백만 원	3백만 원	차이 없음
캐나다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	10백만 원	14.2백만 원	4.2백만 원

이것은 공무원(군인) 연금과 사학연금 간의 과세형평성이 상실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상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한 바 있다.²⁰ 캐나다 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그러나, 현재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과거 사립학교에 재직하였으며 사학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아 위에서 언급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²¹

19. 심지어는 연금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게 된다. 공적연금 이외에 캐나다에서 추가적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캐나다 세율이 한국의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보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임.

20. 한·캐나다 조세조약 상 공무원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에 대한 예규로는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2016.12.29.)의 예규가 있으며,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예규는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2016.03.31.)의 예규가 있다.

21. 사학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예규는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4(2011.09.05.)의 예규가 있으며, 사학연금은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나. 사학연금 수급자만 과세부담이 커지는 문제점 발생

(1) 공무원(군인)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의 연금이체에 따른 문제점

현재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을 비하여 사학연금만이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캐나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연금이체와 관련하여 불리한 과세취급을 받고 있다. 연금이체라 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의거하여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수급자의 합산과 관련하여 최종 연금지급지가 사학연금 공단일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가령 공무원에서 240개월 근무를 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학연금을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비록 공무원연금 수급기간이 월등히 길더라도 연금에 대하여 합산을 신청한 경우라면 최종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사학연금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해당하는 각각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에서 재직기간이 최종 250개월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240개월분에 해당하는 연금지급액은 공무원연금에서 이체받게 된다. 이 경우 합산연금수급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서 최종 퇴직을 하였다면 캐나다 국세청에 과세를 당하지 않게 되지만, 10개월 더 사학연금 기관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캐나다 국세청에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다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사학연금에서 240개월을 근무하고 최종 공무원연금 기관에 10개월 근무하고 최종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캐나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현재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을 비하여 사학연금만이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캐나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연금이체와 관련하여 불리한 과세취급을 받고 있다. 현재 각 공단 간 이체 금액을 살펴보면 공무원에서 퇴직 후 사학에 가입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사학연금 수급자에게는 다소 불합리한 과세취급으로 여겨지며 이와 같은 과세조치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17년도 각 연금공단 간 이체금액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학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수급자에 비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에 이체하거나 이체 받은 금액 현황

(단위 : 명, 원)

구분	연도	인원	정기분	정산분	계
이체한 금액	2017년 상반기	89명	1,297,523,640	△23,790,160	1,273,733,480
이체한 금액	2017년 하반기	96명	1,348,566,200	△294,537,860	1,054,028,340
이체한 금액	2018년 상반기	101명	1,422,874,980	△30,681,690	1,392,193,290
이체받은 금액	2017년 상반기	320명	5,083,732,180	△95,043,640	4,988,688,540
이체받은 금액	2017년 하반기	338명	5,414,596,810	281,606,980	5,696,203,790
이체받은 금액	2018년 상반기	367명	5,707,207,640	△103,602,010	5,603,605,630

(※) 사학연금 내부자료(2018)를 참조함.

공무원연금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연금에 지급하는 2017년도 상반기 연금액 이체금액은 2,327백만 원에 그치지만,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10,305백만 원이 된다. 그러므로 상호 금액을 차감하면 7,978백만원이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셈이다. 참고로 군인연금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표 9〉와 같다.

〈표 9〉 사학연금이 군인연금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현황

(단위 : 명, 원)

구분	연도	인원	정기분	정산분	계
이체받은 금액	2017년 상반기	62명	809,542,140	△2,497,160	807,044,980
이체받은 금액	2017년 하반기	65명	870,453,720	13,685,040	884,138,760
이체받은 금액	2018년 상반기	66명	912,545,300	△18,869,160	893,676,140

(※) 사학연금 내부자료(2018)를 참조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의거하여 군인연금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1,691백만원 가량이지만 사학연금이 군인연금에 이체하는 금액은 없다. 이는 사학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군인의 신분으로 재임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학연금 수급자가 해외에서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연금 이체액만 과세대상 금액을 파악해보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9,669백만 원이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의 연계연금에 따른 문제점

2009년부터 국민연금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 10년이 경과되었다. 과거 사학연금은 20년의 연금수급 조건을 충족하여야 만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계법의 시행으로부터 수급조건이 부족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의 재직기간과 사학연금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연금지급 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연금이체의 방법과는 달리 각 공단에서 지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서 지급한 부분을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비과세가 되고 있지만, 사학연금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표 10>은 사학연금의 연계연금 수급자와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계연금 수급자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지급액 또한 커지고 있다. 이중에서 해외에서 수령하는 연금 중에서 연계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고 있으며, 연계유족연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10>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계연금수급자와 금액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연도	전체			연계퇴직연금			연계유족연금		
	인원	지급액	평균 연금액	인원	지급액	평균 연금액	인원	지급액	평균 연금액
2009	7	28,582	4,083	7	28,582	4,083	-	-	-
2010	18	137,279	7,627	18	137,279	7,627	-	-	-
2011	42	310,035	7,382	42	310,035	7,382	-	-	-
2012	137	829,534	6,055	137	829,534	6,055	-	-	-
2013	154	1,349,517	8,763	153	1,348,453	8,813	1	1,063	1,063
2014	240	1,824,946	7,604	238	1,821,915	7,655	2	3,031	1,515
2015	371	2,932,736	7,905	369	2,928,466	7,936	2	4,270	2,135
2016	511	4,169,881	8,160	508	4,159,450	8,188	3	10,430	3,477
2017	684	5,491,234	8,028	680	5,474,664	8,051	4	16,570	4,142

☞ 사학연금 통계연보(2017)을 참조함.

2. 특수지역연금 간의 과세 예규 해석 상이에 따른 문제점

가. 군인연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예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중에서 사학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과는 달리 해석이 되고 있다. 이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연금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수지역연금 중에서 사학연금과 유독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학연금에 대하여만 법령의 해석이 있었다. 사학연금은 사회보장연금이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된다고 해석하였다.²² 그러나 후에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각각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밝힌바 있다.²³

캐나다 거주자가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군인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던 것에 해석이다.²⁴

현재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에는 현행 연금 및 보험연금이 대하여 과세여부를 정하고 있다. 우선,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어느 한쪽 계약국에서도 그 계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계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계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로 정하고 있다.

2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4 (2011.09.05)

23. 군인연금에 대한 국세청 예규로는 서면-2014-법령해석국조-19099(2016.03.31.)이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555(2016.12.29.)이다.

24.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 연금)

이밖에,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나. 사학연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

사학연금이 현재 캐나다 거주지 국에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은 사학연금이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한 국제세의 예규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캐나다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수령하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은「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연금은「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및「한국·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²⁶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자가 이민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4, 2011.09.05(사학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6.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27.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연금소득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이「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과「공무원 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을 포함하고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연금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 제20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과세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퇴직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은 제외한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 수령액 ×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 수/총기여금 불입월 수)로 정하고 있음.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캐나다에서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과거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에 대하여는 TEE(Taxation-Exemption-Exemption) 방식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시점에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2002년 이후 분부터는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EET(Exemption-Exemption-Taxation)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어 비로소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²⁷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에서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말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1조에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는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캐나다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2조에 협정의 적용대상 법령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한하여 적용한다.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하며, 캐나다에 있어서는 (1) 노령보장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과 (2) 캐나다연금 제도와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말한다. 이 협정은 상기 법령을 개정·보충·통합·대체하는 일방 계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이러한 개정·보충·통합·대체의 공포 또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면으로 타방 계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달리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보충·통합·대체하는 장래의 법령에도 적용한다.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법령은 일방 계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그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학연금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과세상 문제점

사학연금제도는 공익을 위한 국가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제도의 연금 수령자는 해외에서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수행하여야 할 노후소득 보장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 해외에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수령시 거주지국에서 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해외 수령 시 거주지국에서 과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학연금제도가 공익성이 있음은 연금제도의 태동과 운영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사학연금제도가 법령에 의하여 태동되었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준정부기관으로서 기금의 예산과 집행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사학연금제도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수행하여야 할 노후소득 보장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지역연금의 하나에 해당된다. 특수지역연금 간에는 동일한 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사학연금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도이다. 공무원과 군인으로서의 재직하다가 사학연금으로 이전 시 공무원 및 군인의 재직기간을 상호간에 인정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에서 공무원 및 군인으로 이전 시에도 재직기간을 상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담률이나 급여의 결정시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연금제도가 본연의 목적대로 수행되기 위하여 교원이 부담하는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급여를 일부 지원하는 등 교육예산의 일부를 사학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급여를 사학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음”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지원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학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부로 보아 비과세가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다음 <표 11>은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지원의 법적근거를 나타낸 것이다.

<표 11>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지원 법적 근거

구 분	국가부담금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국고보조 및 국고사업의 위탁	정부지원 규정
조문	연금법 46조, 시행령 68의2	연금법 47조, 시행령 69의3	연금법 60조, 연금법60의3	연금법 53조의7
부담률	부담금 전체 17% 중에서 3.5% 부담	- 대학이상법인 : 40% - 공단(236억 원) 국가 : 나머지 금액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 부담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 상기 표의 연금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칭하며,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

3. 한국과 캐나다 사회보장법률의 해석상의 문제점

가. 사회보장법률의 적용대상 한정의 문제점

한·캐나다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2조에는 협정의 적용대상 법령을 명기하고 있다. 협정문에서는 해당 법령을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하고 있고, 캐나다에 있어서는 (1) 노령보장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및 (2) 캐나다 연금제도와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의미하고 있다. 이 협정은 상기 법령을 개정·보충·통합·대체하는 일방 계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러한 개정·보충·통합·대체의 공포 또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면으로 타방 계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달리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보충·통합·대체하는 장래의 법령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법령은 일방 계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그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한 연금의 한도에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⁸ 반면,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노령보장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및 캐나다 연금제도와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협정이 적용되는 한국의 법령은 오직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다. 그러므로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원 등 특수직역 연금법과 의료·산재 및 고용보험법 등은 본 협정의

28.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의 사회보장협약 체결현황으로 국민연금의 외국인에 대한 연금지급 특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도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2) 수급요건으로는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와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가능함.

29.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는 한국의 법령은 단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원 등 특수직역 연금법 등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적용대상 법령이 아니다.²⁹ 그렇기 때문에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에 한국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캐나다에서는 조세협약에 따라 캐나다의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나. 사회보장의 문구의 해석의 문제점

현행 조세협약에서는 사회보장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은 비과세대상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과세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의 개념까지 확대해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의는 제3조에서 정하고 있다.³⁰

우선,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이에 반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다. 사회보장법률의 법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

OECD모델조약 주석서 제18조에 연금의 과세 관련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은퇴근로자(former employee)는 물론 그 근로자의 미망인, 자녀 및 동거자 등의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과 과거 고용관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연금 같은 기타 유사지급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 제안규정은 각 계약국의 사회보장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회보장법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주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이나 은퇴급여 수준을 제공하거나, 혹은 실업, 근무재해, 질병 및 사망 등의 경우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한 강행적

30.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 특징은 국가가 급부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4. 사학연금수급자의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과세 사례

가. 한국과 캐나다 소득세 제도의 차이점

한국과 캐나다는 어떤 면에서 세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캐나다와 한국의 소득세 제도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로 나누어진다. 분리과세는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소득의 징수와 납부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의 전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른 세율(한계 세율)을 적용하여 고소득자에게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빈익빈 부익부의 폐단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천징수를 통한 분리과세 방법은 비거주자의 세금납부 같은 한정적인 경우에 이용되고 대부분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스스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소득세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적용에서는 광범위하게 분리과세를 인정함으로써 대부분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구체적으로 이자, 배당, 1주택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종결된다. 반면, 캐나다는 일부 비과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하여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하도록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예를 들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등)에도 캐나다에서는 예외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납세자 스스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납세 의무를

31. 캐나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세금 연도에 약 2,451만 명이 세금신고를 했으며 이는 총인구인 약 3,500만 명의 70.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한국의 세금신고자 비율인 7.9%와 캐나다의 비율인 70.0%를 고려하면 한국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는 반대로 캐나다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음.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³¹

나. 한국과 캐나다 소득의 전세계소득 합산 신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사례 분석

위에서 언급한 사례를 보충하여 사학연금수급자가 매월 한국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3백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자. 물론 과세대상 소득의 간단한 가정을 위하여 본인과 배우자만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재직기간은 2002년 이후 240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재직한 것으로 가정을 해보고자 한다. 공단에서 매월 연금을 3백만 원 지급하면서 연금세액조건표에 따라 과세를 한다고 할 경우 실제로 과세대상에 속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1년 연금수령액 36,000,000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을 안분하면 240개월/240개월로 전액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연금소득공제는 85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³², 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은 2,750만원이 된다. 이때 공제되는 항목은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 시에는 본인공제만 적용되며 부양가족공제나 표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본공제액 150만원만 공제되게 된다. 이런 경우 과세표준은 2,6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282만원으로 산출된다.³³

이 금액을 캐나다에서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 및 해외에 추가적인 소득은 없고 단지 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산출된다. 이 금액을 환율로 계산하면 \$36,000라고 가정을 해보자. 캐나다에서 과세대상으로 하는 금액은 전체 연금급여액이므로 \$36,000가 된다. 캐나다는 한국과 같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면, 기본공제와 노인공제 합 20%만 공제된다. 즉, 기본공제 \$12,000와 노인공제 \$8,000의 합 20%가 공제된다. 그러므로 $(\$12,000 + \$8,000) \times 20\% = \$4,000$ 가 공제된다. 세법상 과세대상금액은 \$32,000가 되며, 세율은 20%가 적용되어 \$6,400가 되며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 캐나다 국제청에 총 납부해야할 세액은 640만 원 가량이 된다. 이 경우 한국에 납부한 282만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게 되므로 추가로 납부하게 될 금액은 358만원이 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노인공제액은 1/2로 감소하게 되므로 납부하는 세액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358만원이 되므로 1개월분의 급여인 300만원보다 더욱 큰 금액으로 과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32. 연금소득공제는 당해 연도에 받은 총 연금액에서 구간별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총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이면 전액공제하고, 350만원초과 7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공제하며,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는 490만 원+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하며, 1,400만 원을 초과 시에는 630만 원+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한다. 즉, 630만 원+(3,600만 원-1,400만 원)× 20%=850만원이 됨.

33. 과세표준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에 대하여는 15%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 × 15%-108만 원)으로 총 납부할 세금은 282만 원이 됨.

같은 사례를 표로 정리하여 보면 <표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2> 사학연금 가입자의 해외 거주 연금수령 시 전체 세부담 비교

국내 과세 구분	국내 과세금액	해외 과세 구분	캐나다 과세 금액
한국에서 수령하는 총 급여액	3,600만원	캐나다 과세대상 급여액	\$36,000
연금소득공제액	850만원	소득공제액	\$4,000
세법상 과세대상소득	2,750만원	세법상 과세대상소득	\$ 32,000
공제항목	150만원	세율	20%
과세표준	2,600만원	산출세액	\$ 6,400
적용 세율	15%	환율	1,000원/\$
산출세액	282만원	원화 환산 세액	640만원

다. 과세대상 금액 포함으로 인한 각종 사회보장 부조금의 혜택 감소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학연금 수급자가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생활보조금(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과 배우자 보조금(Allowance)을 타 연금수급자에 비하여 적게 받거나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캐나다는 노인연금과 별도로 소득이 낮은 노인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GIS) 또는 배우자 보조금(Allowance)을 지급받게 된다. 그렇지만 소득이 많이 신고 되면 이러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2016년 기준으로 독신의 소득이 \$17,304를 넘거나 부부의 가구소득이 \$22,848을 초과하면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생활보조금은 노인연금과 달리 캐나다에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고, 캐나다를 떠나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러한 보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산상태와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급기준은 연방정부에서 운용하는 대부분의 복지제도인 CCB(Canada Child Benefit)³⁴ 등 거의 모든 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학연금 수급자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34. 기존의 CCTB(Canada Child Tax Benefit)과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가 합쳐져서 2016년 7월부터 CCB(Canada Child Benefit)로 통합되었음.

제4장 한국 · 캐나다 조세조약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가입자와 특수지역연금 가입자간의 과세 형평성 유지

가. 공적연금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고려한 비과세 유도

과세당국에서는 연금을 해외에서 수령할 경우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 간에 동일한 세제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공적연금이 태동할 때부터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과 특수목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수지역연금으로 이분화하여 각각 제도를 창설하였다. 초창기에는 국제적 이동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국가 간의 조세협약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연금의 국제 조세적 측면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국제적 조세에 부합한 세제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국제적 조세측면에 부합한 국가 간 동일한 세제취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간의 세제취급이 동등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직군에 따른 공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지역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으로 연금 수급권자 확보가 용이해졌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졌으며, 실질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³⁵ 향후 사학연금 수령자의 캐나다 비과세적용을 위해서는 사학연금이

35.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지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 우체국)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연계제도는 2009년 2월 6일에 공포되었는데 법령은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다.

특수지역연금의 하나라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학연금제도는 특수지역연금의 하나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캐나다에서 적용하는 과세가 모든 공적연금제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연금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제도 개선의 취지에 부응하여 국제조세의 측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국내 예규수정을 통한 비과세 유도

해외에서 사학연금수급자와 기타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학연금수급자의 국내 예규수정을 통한 비과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³⁶ 조세조약의 수정은 양 국가 간의 협약이 필요하며 개정이 장기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해석은 조세조약과 마찬가지로 과세당국의 법해석 의견을 표출하는 공식적인 과세지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학연금에서는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의 법해석을 변경하여 특수지역연금 모두가 공히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 시 비과세가 될 수 있도록 차선책으로 예규를 변경하여 비과세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특수지역연금 간 동일한 과세 적용 유도는 시급한 문제로 현행과 같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령자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예규변경을 통하여 캐나다 거주지국에서 비과세가 되고 있지만, 사학연금은 아직까지 예규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는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사학연금 수령자 간의 과세 형평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과 같은 과세적용은 동일한 특수지역의 연금제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불균형은 특수지역연금이라고 불리우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간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 간에 적용되는 과세적용의 차이를 발생케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종 업종 간 소득세 과세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만간 예규를 변경하여 캐나다에서 동일한 과세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세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는 국가사업의

36. 원칙적으로는 각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은 양국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정이 용이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조세조약의 개정보다는 일방국에서 다루고 있는 세법해석의견서 및 세법해석 지침인 예규 등을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도 해결가능하다. 과세관청의 예규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서 예규의 변경은 조세조약 변경의 효력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환으로 공익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과 같이 캐나다에서 사학연금수급자가 과세되는 것은 피하고 사학연금제도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제도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학연금도 기타 연금과 동일하게 비과세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사학연금제도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하나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과세의 일치를 할 필요가 있다.

2. 한국 · 캐나다 조세협약의 개정을 통한 미비점 보완

가. 조세조약의 수정

한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약 제18조에는 규정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등도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 · 캐나다 조세협약 18조에 규정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보장법률로 규정된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국민연금 이외에 공무원과 사학 및 군인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금은 캐나다에서 이를 비과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전쟁 연금 및 수당이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그리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구를 수정하여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을 한국의 공적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보장법률에 별도의 언급

현재 한 · 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 및 보험연금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에는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전쟁 연금 및 수당과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에 대하여 사회보장법률의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보장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부의 구체적인 법률명은 없는 상황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은 타방계약국에서 이를 수령할 경우 비과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한하여 해석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를 확대하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까지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의정서의 마련

현재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를 수정하기에는 양 국가 간의 협약이 필요하며, 이를 수정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조세조약을 수정하기 보다는 조세조약에 준하는 양방 국가의 상호 의정서를 체결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 등은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한국 내에서의 과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캐나다에서 수령하는 연금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급한 연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호협약에 의한 의정서에서는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공적연금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캐나다에서 비과세하도록 상호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세협약과 의정서는 각 국가마다 체결된 조세협약의 내용이 상이하야 각 국가마다 일일이 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사회보장법률의 규정 대상 확대

현대사회는 글로벌화 사회로서 국내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야에도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제적 이동인구의 발생은 생기기 마련이며, 국제적인 이동인구가 잦아지면서 이제는 한 국가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거주할 권리를 선택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거주하게 된다.

과거 민간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함으로써 국제적 인력 이동을 대부분 차지하였지만, 이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권의 자유로 인하여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자회사 설립 및 파견이 잦아지면서 공무원 및 군인, 사립학교의 선생님들도 해외로의 잦은 왕래가 있게 되었고, 급기야는 노후의 삶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여생을 보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재 연금 관련 사회보장협약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국한되고 있어 공무원 등은 현재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사회보장협약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마. 과세당국의 명확한 법적용을 위한 조세조약 문구의 구체화 필요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고 납세자의 세무행정의 편리를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있어서 국제적 이동에 대한 양국가 간의 명확한 과세기준이 성립되어야 한다. 조세조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의 납세자가 임의로 세금을 누락한다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에서 이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세조약에서 과세관청의 명확하지 못한 예규 및 법해석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신뢰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등에 대하여 예규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다양한 민족이 한나라의 구성체로 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만 조세조약이 불분명하여 탈세를 했을 경우 캐나다 과세관청이 한국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한국과 캐나다 간의 명확한 조세조약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과세당국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법해석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간에 과세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국내 모든 공적연금에 대하여는 공히 비과세가 되도록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및 국민연금 준용 방안 모색

가. 사학연금공단이 별도로 사회보장협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방안

한국에서 지급한 사학연금이 캐나다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협약을 신규로 체결함으로써 과세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특수지역연금에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국마다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특수지역연금 중에 하나인 사학연금이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한다면 사학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로 해석되어 비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세조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학연금공단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국제인력이 필요하여 많은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협정을 특수지역연금공단에서 이를 각국마다 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업무가 수반되며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인력이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각국마다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조세협약에서 체결된 사회보장 지급금에 대한 조항과 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아야 하며, 사회보장세의 면제에 관한 조세조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내용과 위반되지 않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전문조직과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³⁷ 그래서 각 특수지역연금공단이 각국과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그다지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그 대신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약을 특수지역연금이 그대로 준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나. 국민연금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약을 특수지역연금이 준용하는 방안

특수지역연금공단에서 직접 사회보장협약 업무를 관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약을 준용하여 특수지역연금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련 업무의 전문조직의 구축과 전문 인력의 활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각국 간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은 외교부에서 주관하여 체결하지만 체결내용은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연금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중요하며, 연금공단은 이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국민연금의 사회보장협약 체결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각국에서 요구하는 연금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양국 간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각 국에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금가입기간 합산협정을

37. 김성숙, 2000, 사회보장협정의 현황 및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10권 제1호 : 271-287

38. 주요국으로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헝가리,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이에 해당됨.

체결한 국가가 17개국이다.³⁸ 해외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연금가입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과 외국연금 합산 가입기간이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며, 해당국에서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며, 외국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외국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들어 보고자 한다. 박모 씨(66세)는 지난 1998년부터 5년간 미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연금에 가입을 하였으나, 연금을 받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기간인 10년에 미치지 못하여 미국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박씨는 귀국 후에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하였고 61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으로부터 한국·미국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미국연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박씨는 미국연금 가입기간 5년과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이 합산되어 미국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10년을 충족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미국 사회보장청에서도 매달 250달러인 한화 28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³⁹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가입기간의 공백을 보충하여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에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39.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안내 책자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김모 씨(65세)는 호주 이민 전 한국 직장생활 시절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것이 생각나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으며, 김씨는 국민연금 직원으로부터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가입기간 합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함을 알고 연금을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는 호주 사회보장기관을 통해 김 씨의 호주 가입이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 후, 한국 가입기간 25개월에 해당되는 협정에 의한 한국 노령연금을 매월 11만 200원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김씨는 호주연금(11년간 호주에서 근로 거주)을 신청해 매달 1,400달러(한화 130만 원)를 호주 사회보장기관에서 수령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A대기업 파견근로자 출신인 최 모 씨(62세) 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배포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안내문'을 받고 지난 2013년 4월 1일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 씨는 스페인에서 파견근무 중 2년여 간의 스페인 연금 가입이력이 있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스페인 연금을 신청했다. 한국의 12년 10개월과 스페인의 2년이 넘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스페인 연금수급 요건인 15년 이상의 가입기간(50세 이후 최소 2년간의 가입기간 포함)을 충족했다. 따라서 스페인 연금을 연간 544,18유로(한화 78만 7,000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합산협정에 의해 외국연금을 수급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2,723명이며 협정대상국으로부터 수급한 외국연금액은 475억 원(누계)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5장 결 론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에서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국가 간의 국제이동 인력 증가와 이민자 등의 활발한 국제적인 이동은 국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규정 근거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금소득 과세의 대부분은 소득과세의 근간으로 꼽히는 원천지국 과세와 지급지국 과세가 양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국의 소득과세의 원칙은 양 국가간에 체결한 조세협약을 우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금세제를 위한 조세조약 체결·개정시에는 국제이동 인력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캐나다 과세의 경우에는 내국세법 규정에 의해 외국에서 받은 연금은 과세대상소득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양 국간의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거주지국에서 전세계소득에서 과세를 하되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이동 근로자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외에서 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근로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사학연금 수급자가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캐나다 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한국에서 지급한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될 경우 해외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국내에서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한국과 캐나다가 상호간에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여 캐나다 거주지국에서는 비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외 체약국과 사회보장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하여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공적연금 간에 동일한 과세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수급자에 비하여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학연금수급자가 해외에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한국·캐나다 조세협약의 개정을 통하여 과세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민연금과 같이 사학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도 캐나다 거주지국에서 비과세 되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의 개정을 통하여 현행과 같은 과세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조약의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급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연금의 종류를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한국과 캐나다 양 국가 간의 상호조세조약에 따른 의정서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금 및 보험연금에 관하여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계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문구를 좀 더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법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은 타방계약국에서 이를 수령할 경우 비과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는 달리 공적연금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세계적인 측면은 법 개정 변화에 쉽게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 연금소득과세 뿐만 아니라 이에 부응하는 국제조세의 조세조약 측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조세조약에서 요구하는 사회보장법률의 규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금 관련 사회보장협약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맺고 있어 공무원 등은 현재 거주 국가 간 사회보장협약이 맺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향후 연금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은 과세문제가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 특히 영미계통인 영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같이 캐나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거주지국의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연금에 비하여 특수직역연금의 세제취급이 불리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과 같이 한국에서 지급하는 사학연금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령시에 각국에서 거주자에게 과세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국민연금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약을 사학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의 각 공단에서는 국제협약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과세당국의 명확한 법적용을 위한 조세조약의 문구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양 국가 간에 불필요한 과세분쟁을 줄이고 납세자의 세무행정의 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가 간의 명확한 과세가 성립되어야 한다. 한국 내에서는 각종 예규나 법해석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며, 해외 연금수령 시에는 공적연금 간에 과세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공적연금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2017), 2017년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 국세청 (2006),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 「조세학술논집」 제22집 제2호 : 249~268
- 김선영 (2013),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절차」, Business, Finance & Law 제57호: 66~79
- 김성숙 (2000), 「사회보장협정의 현황 및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10권 제1호: 271~287
- 김영순 (2015),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범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모회사시간 지분 '소유' 범위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7권 제2호 : 405~434
- 김재승 (2014),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 과세방법의 개선, 법학논총 제34집 제3호 : 207~230
- 김진웅 (2009), 「국제거래에 있어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협약의 취급방안」, 「조세연구」 제9-3집 : 29~70
- 손해연 (2010), 「조세조약 개정을 통한 한·중 국제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월드텍스연구논집발행
- 유희립 (2011), 「한·중 조세조약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1-3집: 359-413
- 윤지현 (2007),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개념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기업법연구」 제21권 제3호 : 509-532
- 이상엽·박수진·유현영·이형민·조승수 (2017),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조문별 조세조약 체결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전영준 (2015),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 「판례연구」 제29집 제1호 : 367-399
- 홍범교 (2013), 「주요국의 연금세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보고서
- 홍범교·송은주·박수진 (2013), 「국제이동 인력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2006), 「한·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서명」,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참고문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국제사회보장협정 체결의 대응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보고서 95-01
- 국민연금공단 Homepage <http://www@nps.or.kr/>
- 공무원연금공단 Homepage <http://www@geps.or.kr/>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Homepage <http://www@tp.or.kr/>
- 군인연금공단 Homepage <http://www@mps.go.kr/>